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2013년 10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무역구제정책팀 나기용 팀장, 조부임 사무관(5552)
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, 유재열 사무관(4958), 최경순 사무관(4953)
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, 김영민 사무관(5572), 나강운 사무관(4964)

제321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

- 『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』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 부과하기로 판정-

- 『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』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도 3년 연장하기로 판정 -

- 돈육가공 3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'13.10.29(화) 제321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『**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**(Oriented Polypropylene Film, "OPP필름")』에 대해 **덤핑방지관세**를 **5년간 부과**하기로 **최종 판정**함

○ 아울러, 『**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**(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, "DTY")』에 대해 **덤핑방지관세 부과**를 향후 **3년간 연장**하기로 **최종 판정**함

○ **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**을 신청한 **3개 기업**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**무역피해**가 있다고 **판정**함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1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**삼영화학공업(주), (주)필맥스, (주)화승인더스트리**가 신청한 '**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(Oriented Polypropylene Film, "OPP필름")**에 대한 **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**'에 대하여,

○ **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있음을 인정**하고, **향후 5년간 업체별로 3.48~25.04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**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

* 용도 : 식품, 담배,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,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

○ **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**은 중국 3.89~25.05%, 인도네시아 4.43~5.98%, 태국 3.48~10.55%임

○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

□ 동 건의 신청인은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, **국내 판매량이 감소**하고 **영업이익이 악화**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**'12.11.22일 덤핑조사를 신청**하였으며,

○ 무역위원회는 '13.1.7 **조사개시를 결정하고** 그 동안 국내생산자,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**국내외 현지실사, 공청회** 등을 실시하였음

* 국내외 현지실사('13.6~8월), 공청회('13.9.27)

□ **동 조치가 시행되면**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OPP필름 산업이 공정한 **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국내시장 규모('12년) : 2,294억원(국산품 1,434억원, 덤핑물품 606억원, 기타 254억원)

2 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**(주)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(주)가 신청**한 '**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(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, "DTY")**에 대한 **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**'에 대하여,

○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**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**하고, **향후 3년간 업체별로 2.22~8.69%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**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

* 용도 : 주로 제직, 편직 등 직물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됨

○ **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**은 중국 2.72~8.69%, 대만 2.22~7.35%, 말레이시아 3.96~5.59%임

○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

□ 동 건의 재심사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**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**하고, **중국 등의 최근 급격한 생산설비 증설**로 인해 **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**가 있다며 **'12.11.16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**하였으며,

* 원심조치 : '06. 10. 20 ~ '09. 10. 19(3년), 2.60 ~ 8.69% 덤핑방지관세 부과
* 1차재심조치 : '10. 05. 18 ~ '13. 05. 17(3년), 2.37 ~ 8.69% 덤핑방지관세 부과
* 중국(헹리 및 셍홍) 생산설비 추가증설 : ('12) 헹리 5만톤, ('13) 셍홍 30만톤, ('14 이후) 셍홍 45만톤 등

○ 무역위원회는 '13.1.9 **조사개시를 결정하고** 그 동안 국내생산자,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**국내외 현지실사, 공청회** 등을 실시하였음

* 국내외 현지실사('13.4~9월초), 공청회('13.9.13)

□ 이번 **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**으로, **국내 DTY 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방지**하고, **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**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국내시장 규모('11년) : 2,574억원(국산품 967억원, 덤핑물품 1,237억원, 기타 370억원)

3 3개 돈육가공 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

□ A사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은 한-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받음

○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국내산의 판매가격 하락 등을 통해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

* EU산 돼지고기 수입액(백만불) : ('11상) 284 → ('12상) 316, 11.2%

□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,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

<붙임 1>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1부
<붙임 2> 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1부.
<붙임 3>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팀 조부임 사무관(☎ 2110-5552), 산업피해조사팀 유재열 사무관(☎ 2110-4958), 최경순 사무관(☎ 2110-4954), 덤핑조사팀 김영민 사무관(☎ 2110-5572), 나강운 사무관(☎ 2110-49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최종 판정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삼영화학공업(주), (주)필맥스, (주)화승인더스트리

○ 조사대상국 : 중국, 인도네시아, 태국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두께가 10㎛ 이상인 OPP필름
(Oriented Polypropylene Film, "OPP필름")

- 정의 : 폴리프로필렌을 용융, 압출, 냉각 과정을 통해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하여 제조한 무색·무취·무미하고 투명성과 광택성이 있는 필름

- 관세분류 : HSK 3920.20.0000, 3921.90.2000

- 용도 : 식품, 담배, 앨범 등의 포장재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

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OPP필름 가공업체, 식품·제과회사 등

○ 수입자 : (주)동남소재, (주)우성엠에프, (주)에이엠아이 등

□ 그 동안의 조치 경과

○ '12.11.22 : 조사신청 / '13.1.7 : 조사개시결정 공고

○ '13.6~8월 :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

○ 공청회('13.9.27) 및 최종 판정('13.10.29)

□ 국가별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수준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덤핑방지관세율
중 국	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., Ltd.(슈강) 등 6개사	3.89~25.04%
	그 밖의 공급자	7.40%
인도네시아	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.(인도폴리) 등 3개사	4.43~5.98%
	그 밖의 공급자	5.98%
태 국	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., Ltd(타이필름) 등 2개사	3.48~10.55%
	그 밖의 공급자	10.55%

□ 국내시장 현황['12년 기준]

○ 국내시장규모 : 2,294억원 (78,550톤)

참고 2 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(주)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(주)

○ 재심사 대상국 : 중국, 대만 및 말레이시아

○ 재심사대상물품

- 품명 :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(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)

- 정의 : 테레프탈산(TPA)과 모노에틸렌글리콜(MEG)을 85:35의 비율로 중합(重合)하여 추출되는 폴리에스테르를 가늘고 매우 긴 형태의 장섬유사로 만든 뒤 연신(延伸)·가연(加燃) 등의 가공처리를 거친 제품

- 관세분류 : HSK 5402.33.9000

- 용도 : 주로 직물제조(제직, 편직 등)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됨

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윤세통상(주), (주)서림섬유, (주)삼원산업 등

○ 수입자 : (주)동진, (주)신택스타일, 삼성물산(주) 등

□ 그 동안의 조치 경과

○ '12.11.16 : 재심사 신청 / '12.12.12 : 조사개시 결정 공고

○ 공청회('13.9.13) 및 최종 판정('13.10.29)

※ 반덤핑조치 경과
○ 원심조치 : '06.10.20 ~ '09.10.19(3년), 2.60 ~ 8.69% 덤핑방지관세 부과
○ 1차재심조치 : '10.05.18 ~ '13.05.17(3년), 2.37 ~ 8.69%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국가별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수준

공급국	공 급 자	원 심 부과율	재심(1차) 부과율	재심(2차) 부과율
중국	헹리, 쉥홍 외 기타	8.69%	3.36~8.69%	2.72~8.69%
대만	릴리, 난야 외 기타	2.76~8.69%	2.37~7.35%	2.22~7.35%
말레이시아	레크론 외 기타	2.78%	5.59%	3.96~5.59%

□ 국내시장 현황['11년 기준]

○ 국내시장 규모 : 2,574억원 (83,962톤)

붙임 3 **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**

□ **(개념)**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(**요건**) 신청기업의 피해가 FTA로 인한 수입이 주된 원인일 것

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
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・고용・가동률・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・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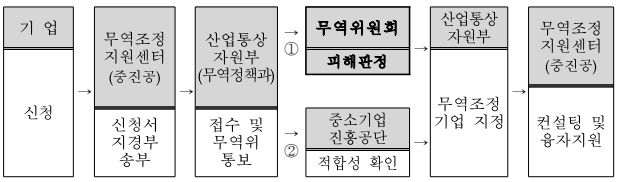
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피해판정현황)** '13년(9월 현재)에 총23개 기업에 대한 판정을 했으며, 18개 기업에 피해판정

<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(단위 : 개사)>

구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*
판정 건수	3	3	2	-	13	23
피해 판정	2	3	2	-	8	18
피해 없음 (철회 포함)	1				5	5

* '2013년 10월 29일 현재

○ 총 33건의 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핸드백, 복분자주, 등산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정

* 판정품목(건수): 머루주(1), 시계(1), 염장고등어(1), 복분자주(1), 골프퓌어(1), 도료경화제(1), 티셔츠(1), 탈모방지샴푸(1), 초콜릿(1), 방적기계부품(1), 와인(1), 등산화(1), 스포츠용신발(2), 에틸렌글리콜(1), 페인트(1), 염모제(1), 판유리(1)

□ **(지원내용)** 컨설팅 자금 및 융자 지원

*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기업 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융자 :

-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
* '13년 3/4분기 현재 3.27%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5년 이내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45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